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6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백선희 · 정춘생 · 이해민
황명선 · 황운하 · 박희승
손명수 · 정준호 · 조정식
신장식 · 서왕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

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면결정의 기초가 된 직무행위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배상책임) ① (생략)	제2조(배상책임) ① (헌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신설>	1.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경우
<신설>	2. 제1호에 따른 파면결정의 기초가 된 직무행위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③ (생략)	③ (헌행과 같음)